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9250 |
| 의 뢰 인 | 허종식 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 3. 27. |
| 추계번호 | 25A1825 |

#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2조<br>(중소기업자의 범위) | ○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대상에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(제1항제6호) | 의무규정 |

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2조<br>(중소기업자의 범위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 2. 상세 사유

❑ 중소기업자의 범위(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)

○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“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[1]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를 추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에 의료법인이 포함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다만, 개정안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범위 및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,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

1) 「의료법」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정신병원 또는 의원을,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, 한의사는 한방병원·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,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.
3.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"의료법인"이라 한다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개략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으로,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중소기업 사업체 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1개당 평균 지원금을 산출하고, 그 단가를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수에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있음. 그러나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과 성격, 특성 등이 중소기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추계는 한계가 존재함

❑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 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Ⅳ. 작성자

❑ 작성자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추계세제총괄과 | 서영빈 | 권아영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서영빈 | 02-6788-4653 | ybin@assembly.go.kr |